

서울특별시의회
제336회 정례회

의안번호
3730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
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6. 15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3730

I. 변경안 개요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5. 05. 26.
- 다. 회부일자 : 2025. 05. 27.

2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이 당초 2,230백만원에서 7,292백만원으로 5,061백만원 증가하여, 2026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5,061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3,44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(1,626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6백만원) ※ 이자수입감소(20백만원)

[2026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	4,202	9,263	5,061	120.5
세	외 수 입	168	168	-	-
	경 상 적 세 외 수 입	168	168	-	-
	이 자 수 입	168	168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	4,033	9,095	5,061	125.5
	보 전 수 입 등	3,553	8,615	5,061	142.4
	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323	1,323	-	-
	예 치 금 회 수	2,230	7,292	5,061	226.9
	내 부 거 래	480	480	-	-
	예 탁 금 이 자 수 입	480	480	-	-

[2026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초 (A)	기금운용계 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	4,202	9,263	5,061	120.5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	3,380	3,380	-	-
	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3,380	3,380	-	-
	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2,720	2,720	-	-
	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지원사업	460	460	-	-
	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사업	200	2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	807	5,868	5,061	627.5
	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	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기 타		15	15	-	-
	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15	15	-	-
	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5	15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

1. 사회복지기금 및 변경계획안 개요

- 사회복지기금은 전체 4개의 계정(노인복지계정, 장애인복지계정, 자활계정, 주거지원계정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가운데 주거지원계정은 주택실에서 운용하게 되어있고, 나머지 3개 계정은 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음.
-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4개의 계정 중 장애인복지계정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에 근거하여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2. 운영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검토

- 장애인복지계정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6조²⁾에 따라 운영 중이

-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
 2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-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 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 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 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 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 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
며,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표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기금조성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말 조성액 * ㉑	2025년도 증감액		2025도말 조성액 * ㉒ = ㉑ + ㉓ - ㉔
	수입 ㉓	지출 ㉔	
21,809,634	3,841,654	3,959,530	21,691,758

* 예탁금 별도 :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예산담당관) : 14,400,000천원, 예치금 7,291,758천원

- 본 계정은 2025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22억 3천만원에서 72억 9천 2백만원으로 증가하여, 2026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50억 6천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〈표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2026년 기금운용변경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	지출 계획				
항 목	계획(A)	변경(B)	증감 (B-A)	증감률 (%)	항 목	계획(A)	변경(B)	증감 (B-A)	증감률 (%)
합 계	4,201,631	9,263,047	5,061,416	20.5	합 계	4,201,631	9,263,047	5,061,416	20.5
예치금회수 (전년도이월금)	2,230,342	7,291,758	5,061,416	126.9	사업비 민간 용자금	3,380,000	3,380,000	-	-
민간용자금 회수수입 (전세보증금)	1,323,400	1,323,400	-	-					
예탁금 원금회수 수입(통합재정안 정화기금)	-	-	-	-	예치금	806, 631	5,868,047	5,061,416	527.5
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수입 계획					지출 계획				
항 목	계획(A)	변경(B)	증감 (B-A)	증감률 (%)	항 목	계획(A)	변경(B)	증감 (B-A)	증감률 (%)
예탁금* 이자수입 (통합재 정안정화 기금)	479,520	479,520			기본경비 (사무관리 비)	15,000	15,000	-	-
공공예 금이자 수입 (예치 금)	158,110	158,110							
민간 융자 금수 이자 수입 (전세 보증 금)	10,259	10,259							

- 25년도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의 주요 지출사업은 민간융자금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으로, 해당 사업의 실적 저조에 따라 연도말 예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25년도 사업계획서상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은 74억원이었으며 신규 33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였음.

※ 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개요

- 대상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증장애인
- 방법 : 전세주택을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여 해당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
- 지원금액 : 2인 이하 가구 최대 2억 2천만원, 3인 이상 가구 최대 2억 3천만원
- 지원기간 : 2년 원칙 (희망시 2회에 한해 연장가능, 최대 6년)

-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은 22가구(신규 18가구, 재계약 4가구), 3,951백만원으로 집행률은 53.4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
 - 지원 포기사유로는 금전적·물리적 조건을 만족하는 매물 물색의 어려움이 주된 사유로, 당초 지원 가구는 43가구 였으나, 계약 포기 가구가 21가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.
-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그러나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예·결산 검토보고에서도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.
- 집행기관은 26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33억 8천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, 장애인전세주택 지원사업(27억 2천만원)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(4억 6천만원),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2억)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기존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이러한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기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별 지원 수요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3. 종합의견

-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와 이에 따른 예치금 지출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, 당초 운용계획보다

5,061백만원의 증액(120.5%)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하다 하겠음.

- 그러나, 본 계정은 주요 운용사업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반복적인 불용과 예치금 증가, 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.
-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은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, 실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의 계약포기 사유, 적정매물 확보의 어려움, 지원한도 및 대상주택 기준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집행기관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집행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, 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의 다변화 및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전 문 위 원 김소은	02-2180-8144
입법조사관 도미화	02-2180-8147